

【사건번호 2020-006】 KOTRA 발간물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 : KOTRA
-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
 - 스마트팜 글로벌 트렌드 및 진출전략 등 발간물 3종의 전자파일
- 신청목적: 출판 및 전자책 제작

2. 신청취지

- 신청인은 전자책 제작 및 출판 목적으로 발간물 3종(이하 '발간물 1, 2, 3'이라 함)의 전자파일을 제공신청하였으나,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영리적 이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제공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

3. 사실조사

가. 데이터 수집·관리 및 제공 현황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3종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며, 해당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 따르면,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
 - 발간물 1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, 저자 또는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발행처가 KOTRA라는 사실만 명시하고 있음
 - 발간물 2의 경우, 작성자의 표시는 없으나 저작권은 KOTRA에 있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음. 또한 특이사항으로 각 수출사례에서 멘토를 맡았던 수출전문위원(22인)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음
 - 발간물 3의 경우, 작성자(KOTRA 직원(1권 20인, 2권 24인, 3권 24인))의 성명 및 소속·직위가 기재되어 있으며, 저작권자는 KOTRA로 표시되어 있음. 또한 공공누리 4유형*을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음
- * 출처표시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

나.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를 의미함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,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

다.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

-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.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(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)
-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므로,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

-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(저작자)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며(제10조)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(제45조), 이 사건 데이터의 저작권자 파악을 위해서는 창작의 주체 또는 권리양도와 관련된 사실의 주장 및 입증의 필요하나, 이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제공범위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음
-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, 발행자 또는 공표자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(저작권법 제8조), 이 사건 데이터에 작성자 또는 저작권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된 자를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(저작재산권)자로 추정하되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제공범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
- ※ 비록 피신청인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 별도의 저작권 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피신청인이 보유한다는 문구가 있으나, 저작권 전문기관이 아닌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정보가 저작권 소재 파악 후 게시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, 저작권법 제8조(저작자 등의 추정)에 따라 개별 데이터에 표시가 있는 경우만을 고려함

- 발간물 1의 경우, 작성자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 따르면 KOTRA 임직원이 아닌 미국 내 전문가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며, 해당 작성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발간물 1은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
- 발간물 2의 경우, 표시된 바에 따르면 KOTRA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권리관계가 표시된 바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, 발간물 내에는 수출전문위원(22인)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,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수출전문위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음
 -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발간물 2에는 수출전문위원 22인의 초상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, 비록 수출전문위원들이 자신들의 사진이 포함된 발간물의 제작 및 공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업적 출판에 이용될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
- 발간물 3의 경우, 표시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은 KOTRA가 보유하고 있으므로, 실제 권리관계가 표시된 바와 다르다는 주장 및 입증에 없는 한 발간물 3은 원칙적으로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 - 다만 피신청인 측 담당자는 발간물 3은 비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수집한 자료가 다수 활용되어, 신청인이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제3자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

4. 조정내용

가. 조정결정 사항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.

나. 조정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‘공공데이터법’이라 한다)」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(제17조제1항)
 - 다만,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‘정보공개법’이라 한다)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(제17조제1항각호)

- 이 사건 관련 법령,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데이터는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
 - 이 사건 데이터 중 발간물 1의 경우, 피신청인 소속 외 제3자가 작성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피신청인은 해당 작성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 - 이 사건 데이터 중 발간물 2의 경우, 피신청인이 저작권자라고 표시되어 있으나, 초상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- 이 사건 데이터 중 발간물 3은 피신청인이 저작권자라고 표시되어 있으나, 발간물 내에 피신청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저작물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으므로,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

5. 조정결과

- 조정성립